

주 의 사 항

1. 본 수첩은 입찰시는 물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건설업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전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건설사업 기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4. 본 수첩의 기재내용을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인이 휴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전문건설업등록수첩

업 종	건축구조물강도공사업		
등록번호	경기시흥2018-00-46		
상 호	아시아건설(주) 상하영입(목)	대 표 자	성 시 호
영업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외아문로 234.		
법인(주민) 등록번호	135511-0328291		
국적 또는 소속국가	대한민국	등록일자	2018. 8. 1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임을 증명합니다.

2018 년 8 월 14 일

시 흥 시 장

